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자는 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그 자격기준을 정하고,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산림사업의 규모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비에 1천분의 23에서 1천분의 96까지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업무
3. 관리업무대행 기간 및 지역

③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u> <u>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3조</u> <u>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u> <u>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u> <u>리대행자”라 한다)의 자격기준</u> <u>은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u> <u>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u> <u>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u> <u>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u> <u>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u> <u>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u> <u>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u> <u>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u> <u>1. 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u> <u>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u> <u>성명</u> <u>2. 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u> <u>업무</u> <u>3. 관리업무대행 기간 및 지역</u> <u>③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u> <u>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u> <u>소유자의 동의·협의 확보 및</u> <u>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u>

<u><신 설></u>	<u>한 사항</u> <u>2.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u> <u>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u> <u>3. 현장조사·감독 등 사업관리</u> <u>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u> <u>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u> <u>는 사항으로서 시장·군수·</u> <u>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u> <u>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u> <u>대행 수수료) 시장·군수·구청</u> <u>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u> <u>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u> <u>별표 11과 같다.</u>
---------------------------	--